

뉴욕 시 여성이 괴롭힘이나 차별을 당한 경우, 311번으로 전화하여 인권위원회 담당자를 요청하거나 **(212) 416-0197번으로 직접 통화**하거나 **NYC.gov/HumanRights**에서 뉴욕시 인권위원회(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NYCCHR NYC.gov/HumanRights

# 뉴욕 시에 사는 여성들은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그리고 인간답게

생활하고 근무할 자격이 있습니다





# 뉴욕 시 여성들은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그리고 인간답게 생활하고 근무할 자격이 있습니다.

뉴욕 시 인권위원회는 국내에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반차별법 중 하나인 뉴욕시 인권법(NYC Human Rights Law)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 인권법은 주거, 근로, 공공  
시설에서 발생가능한 22개 범주의 차별(개인의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 신념, 피부색, 국적, 성별, 성적 지향성, 나이,  
장애, 외국인 여부, 시민권 지위 및 기타 보호대상 지위 등)  
로부터 뉴욕 시 방문자, 근로자, 거주자를 모두 보호합니다.  
해당법은 차별적 괴롭힘 및 법 시행 시 발생가능한 편향적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도 보호를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정부와 지역사회 파트너와 공조하여 뉴욕 시  
인권법에 관한 법적 해석지침 개발, 새로운 법안 제안 및  
수립, 다른 계획보다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고 신장시키는  
전략적 지역체 파트너십과 행사 우선 주최 등을 통해 여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여성들이 가정 내, 직장 내, 뉴욕  
시 내의 식당이나 대중교통 등 공공 시설에서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성차별

뉴욕 시 인권법은 실제 또는 인식된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 여성과 여아를 보호합니다. '성별'은 '실제 또는 인지된 성'으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개인의 '성 정체성, 자신에 대한 이미지, 외모, 행동, 표정'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주, 주거지 제공자, 공공 시설 제공자는 '여자는 이렇게 생겨야 해' 라든지 '이렇게 행동해야 해'라는 가정 및 고정관념에 근거하거나 성별로 인해 차별대우하거나 기회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 보호적용 영역:

- 주거지
- 직장
- 공공 시설
- 차별적 괴롭힘
- 편향적 프로파일링

### 상황 예시:

" 저는 승진에서 제외된 적이 있어요. 사장님이 '자네는 여자다운 구석이라고는 없어' 라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 캠퍼스를 거닐고 있던 중 아는 남자가 제 손목을 세게 끌어당기며 '어이, 예쁜데. 내 방에 가자. 진짜 사나이다운 게 뭔지 보여줄게' 라고 한 적이 있어요."

## 임신

뉴욕 시 인권법은 임신으로 인한 업무관련 수행 노력과 능력을 가정하여 판단내린 업무관련 결정을 포함한 차별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는 휴식시간, 임신,

출산, 이와 관련한 의학적 상태로 인한 업무환경의 변화와 같은 적절한 편의를 고용주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적용 영역:**

- 직장
- 주거지
- 공공 시설

**상황 예시:**

“ 저희 사장님은 주기적으로 화장실에 갈 시간도 주지 않았으며 ‘집에 가서 쉬는 게 더 낫겠다’며 저를 집으로 보냈어요.”

**양육자 지위**

뉴욕 시 인권위원회법은 근무 중 또는 구직 중 지속적 또는 직접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거나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주의 차별행위를 금합니다. 고용주는 양육(간호)의 의무를 직장 내의 노력 및 역량 부족으로 결부시킬 수 없습니다.

**보호적용 영역:**

- 직장

**상황 예시:**

“ 인사 관리자는 제가 아버지를 간호해야 하니 직장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저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 가정폭력, 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뉴욕 시 인권법은 직장 또는 가정 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고용주 및 주거지 제공자는 여러분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거나 아파트 임대를 거부하는 등의 차별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기 행위를 당한 경우 무급휴가, 법정심리 참석을 위한 근무시간 조정 등 직장에서 적절한 편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보호적용 영역:

- 주거지
- 직장

### 상황 예시:

“ 저는 가해자의 접근을 금하는 보호명령을 받고 있는데 집주인은 건물 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며 임대를 거부했어요.”

## 자녀의 유무

뉴욕 시 인권법은 단지 여러분에게 아이가 있다는(없다는) 이유로 주거지 제공자의 임대 거부를 금지합니다. 제공자는 세입자를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택/아파트 광고에 기재할 수도 없습니다.


### 보호적용 영역:

- 주거지

### 상황 예시:

“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공인중개사가 해당 건물에 아이가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제 임차신청서는 보지도 않을 것이라더군요.”





# 자주 하는 질문 (FAQ)

**차별행위나 괴롭힘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익명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311번으로 전화해서 인권담당자(Human Rights)를 요청하거나 (212) 416-0197번으로 위원회에 직접 전화해서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 직원이 절차 및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친절히 답변해 줄 것입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위원회에서는 차별행위에 대해 신고하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위원회는 신원 공개 없이 차별행위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위원회는 차별 발생 증거를 확보하여 여러분의 사건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재판 후 또는 합의 중 범법자 또는 가해자에게 여러분에게 정신적 피해, 민사상 과태료, 변호사 선임료 등의 부대 비용을 보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범법자에게 뉴욕 인권법 교육을 수료하거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속한 조직은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위원회에 어떻게 협조할 수 있나요?**

위원회는 연중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 이벤트, 계획, 프로그램 등의 주최 및 참여를 담당합니다.

**NYC.gov/HumanRights**에서 곧 개최되는 행사 참가를 위해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파트너십 계획안을 제안하고자 하시면 **policy@cchr.nyc.gov**로 이메일 전송하십시오. 상세 내용 문의를 위해 담당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갈 것입니다.

